

제43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9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1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1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0)
 23.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상정된 안건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4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4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5
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5
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5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11
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12
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12
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5
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5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25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25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 26
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 26
1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 26
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 26
1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31
1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34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34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34
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0) 36
23.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37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서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쟁점이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전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10시09분)

○소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종 연안해역의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무단 출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무단 출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차장 장인식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리와 관계자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지난 3월 12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해수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들은 앞으로 열리게 될 북극항로 시대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해사기구의 입장에서든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후 해수부가 국내 연안 항로 중 시범 항로를

지정해서 산업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국내 연안 항로의 시범 항로 지정과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장인식 위원님, 다시 한번 대표발의해 주셔서 우리 법안이 입법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 검토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선박 동력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목포, 제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목포, 제주를 시범 항로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양 지역에 구축되고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이후에 세계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전남 지역의 친환경 선박산업 그리고 제주의 탄소중립 목표까지 결합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수부는 즉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장인식 위원님 주신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아마 4월 초중순에 북극항로 관련된 특별법을 본격적으로 소위에서 심의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걸 잘 논의한 이후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금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선제적으로 우리 해수부가 잘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장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10시13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경태 의원, 서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3페이지, 아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5년 12월 16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해양폐기물이 상류의 여러 시군에 유입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을 국가가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이 업무를 다시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해양환경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경태 의원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서천호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수거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한 지원 근거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수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을 국가가 명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지난 소위 논의를 반영하여 현행법 제11조제1항의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서천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해양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10시17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운항결손금액을 보조하는 기존의 보조항로 지정·운영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서삼석 의원안은 현 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 지정·운영 제도로 대체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그리고 장동혁 의원안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보조항로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공영항로 지정·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위탁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하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먼저 면허기준 신설에 관한 윤준병 의원안은 현행법 제5조의 면허기준에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허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은 범위가 넓고 현행법 제5조제1항제4호와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영항로 지정·운영 제도 도입 또는 보조항로 위탁운영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섬 주민 이동권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사업은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국고여객선 건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국가보조항로 사업은 국가가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보조항로를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국가보조항로 지정·운영 체계는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또한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한 결과 안전·서비스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선박 유지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안전·서비스 투자를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부담의 지속 그리고 종전 민간 종사 근로자의 고용관계 변동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보조항로 수는 항로가 단절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 지정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 민간 운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며 민간 종사 근로자의 경우 현재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민간 여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삼석 의원안은 제15조 개정으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데 장동혁 의원안과 같이 운항결손액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의견은 각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입법 취지 및 정책 실효성을 고려한 단일 병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아래 표를 보시면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관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면허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고, 선정 취소 대상을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

운영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영항로로 지정되어 있던 항로가 수익성이 있게 되어 내항여객 운송사업자가 해당 항로에 면허를 받은 경우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영항로 외에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항로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계부처 의견으로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에 최종 동의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인력 증원은 검토·협의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여객선의 운항명령 체계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상교통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여객선의 운항명령 대상 및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삼석 의원안은 운항명령 대상을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으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운항명령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그리고 장동혁 의원안은 대상을 보조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고 운항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운항명령 대상을 공영항로운영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여객선의 운항명령 대상을 정비·확대하고 운항명령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수정의견을 보시면 각 개정안 내용을 종합하여 단일 병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운항명령 대상 관련 공영항로사업자 및 공영항로운영기관 모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 운항명령 사유와 관련해서 장동혁 의원안과 서삼석 의원안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6조 제1항제3호의 여객선 미운항 사유를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안 50조는 보고 및 조사 권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삼석 의원안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조사 사유에 공영항로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53조는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삼석 의원안과 장동혁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지방공사 또는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및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항로 운항 관련 사업경험이 약간 부족하고 직접 여객선을 운항하게 될 경우 선박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동일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추후 별도의 조직·예산을 편성하여 기존의 안전관리 업무와 충돌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는 사업의 범위에 공영항로 운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적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영항로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보고 및 조사에 관련해서 운항명령은 보조항로 외의 항로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련해서는 지방공사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영항로 운영을 위탁받는 것이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제1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소요될 기간과 현 국가보조항로를 운영 중인 민간위탁 선사와의 계약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면허 발급 규정인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후단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전국에 항로가 100개밖에 안 됩니까? 100개 중 29개가 보조항로라고 돼 있는데 더 많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객선 항로 숫자는 그렇게 됩니다.

○주철현 위원 도서는 빼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빼고입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여수시장을 해 봤는데 여수도 섬이 많고 유인도가 많아서 이 여객선 문제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겪었어요. 여객선과 관련된 인허가권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해수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청으로 쫓아와요. 쫓아와 가지고 시장을 괴롭히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인 정부 출범 때도 그랬고 처음부터 지자체 내에서 운행하는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그냥 지자체로 이양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해수부가 죽어도 안 놔요. 죽어도 안 놓으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비용도 지자체보고 부담하라 그래요.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보기에 국제항로라든지 광역자치단체 간을 연결하는 것은 해수부가 권한을 가져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수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 같으면 여수시장한테 권한을 주고 도내 운행 같으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고 이양을 해야지 비용은 부담 안 하면서 권한은 가지려고 하고, 죽어도 안 내려놔요. 그 당시 문제인 정부 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

방이양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해수부가 끝까지 반대해서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간 저는 해수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권한 가지려면 비용도 다 대세요. 왜 갖고 계세요?

한 가지 더, 여객선이라든지 해양 항로, 도선도 똑같이 대중교통으로 됐어요. 그렇게 되면 공영제 실시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지원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영제 하기로. 근데 해수부가 전혀 지금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조항로 빼 놓고 나머지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먼 산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육상교통과는 많이 달라요. 육상교통은 알다시피 시장이나 도지사가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수부가 이것 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비용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근본적으로 해수부에서 이 권한 문제부터 검토해 보시고 육상교통에 버금가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섬과 섬 간의, 섬과 육지 간의 연결인데 섬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권 보장인데 다리 놓아 버리게 되면, 다리 놓는 것도 해수부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건 아닙니다.

○주철현 위원 국토부 권한이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권한이고 의무인데, 사실상 다리 놓기 전까지는 해수부가 책임지고 이것 해야 되는데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남의 일처럼 지금 먼 산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자신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려면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그러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가 100%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수부도 같이 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고 그런 게 결국은 다 돈 때문인데 해수부가 근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문 몇 개 고치는 것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까요?

○주철현 위원 논의를 해 보고 해수부의 기본계획을, 근본적인 계획을 보고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해수부가 조금 더 위원님 들께 설명도 하고 논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주철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입법이 돼 있는 만큼 해수부의 적극적인 주문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간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정해져서…… 여객선 항로라는 게 크게 상업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와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적자가 무조건 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국가가 선박도 지어주고 운항 손실도 감당을 하는 보조항로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을 해서 좀 더 공공기관

으로 위탁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밝히는 것이고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상업 항로라고 분류돼 있는 나머지 항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운항 적자가 나면 손실 보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금년만 하더라도 40억 이상 정도 되는 손실 보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을 해 보시면서 경험하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시청, 도청도 찾아갑시다만 지방해양수산청도 와서 같이 저희들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그렇게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래서 입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저희들이 준비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계신 사업을 이관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돼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밖에 준비할 기간이 없어서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의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철현 위원 지금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여수 시내에서 운행되는 여객선 항로, 100% 적자입니다. 시의 보조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노선이 그럴 겁니다. 보조가 없으면 운행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흑자 나는 노선이 한두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선 한두 개 빼 놓고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적자 노선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 보전 지원 없으면 100% 지금 국가가 보조항로 지정해서 다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자기가 하던 사업이니까 투자는 많이 해 놓고 중단할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운행을 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가 가지고 주민들을 불모로 해서 거의 강제로 뜯어내다시피 그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해수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되어야지 이렇게 글자 몇 개 고쳐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주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 위원님 말씀 저는 100% 공감하고요. 육상에도 보편은 버스 준공영제 있잖아요. 여객선도 여객선 준공영제처럼 그런 걸 도입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자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주철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진짜 말 그대로 준공영제가 도입돼서 국가와 지자체가 여객선, 도선 다 포함해서 일정 부분 서로 매칭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시면 저희 100% 환영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준공영제에 상응하는 손실 나는 적자에 대한 보전 근거 규정은 현재도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대로 이 법 조문을 개편하면 잘못하면 그게 빠질 수가 있어서 그 조항을 존치하는 의견도 전문위원님께서 주셔서 이 개정안대로 하시더라도,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대로 따르더라도 그 상업 항로 중에 적자가 나는 손실 보전 규정은 근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들이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보고 지자체 의견 들어보고 나서 다음

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혹시나 주 위원님께서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부는 준공영제에 준하는 적자 보전을 한다니까 한번 그걸 체크해서 제가 다음번 소위를 또 열 테니까 정부에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번 소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지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하여간 저희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마음 급해도 지금 주철현 위원님보다 급하지는 않잖아요. 주철현 위원님만큼은 안 급하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그사이에 주철현 위원님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제가 4월에는 꼭 이 부분을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원님, 그러면 되겠지요?

○주철현 위원 예, 저희들이 한번 해수부랑 지자체랑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올라 올 때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6)

(10시35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53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내에 장기 미운항 선박은 230척에 달하며 최근 부산항 장기계류선박 기름유출사고 등 안전·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선박 자체에 대한 강제 처분의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사용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이행력 제고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은 오기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10시36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8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62페이지, 개정안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인데, 현행 항만법 및 시행령은 지방관리무역항등의 시설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 체결 주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에 따른 현행법의 법률 공백 및 흠결을 보완하고 지방관리항만의 관리청인 시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교 의원은 농촌인데 항만에 대해서 많이 했네요.

의사일정 제8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10시38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9항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7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법 제정 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에 폐업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의 경우 3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어업인의 보상 범위에 폐업보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 등의 조치가 있던 당시 양식생물이 단기간에 대량·집중 출하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액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상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행위와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 및 그 손실액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류매각 손실액 보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서는 일부 자료 분석 결과에서 면허연장 불허 영향시기의 추가적 어가하락 영향 발견 등을 도출해 내기도 했지만 내수면 가두리어업 면허연장 불허와 어가하락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 및 가격변동 효과 분석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업인의 보상 범위에 폐업보상을 추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이 추가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으로 기획예산처는 어류매각 가격 결정 요인은 다양하며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므로 어류매각에 따른 손실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7인으로 2인 늘리고 위원으로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시 피해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실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에 손실보상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배를 하고 있고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관련한 경우에는 제척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법 제5조제4항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어업인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가두리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자고 하는 개정 취지와 또 해당 어업인들의 안타까움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안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

정하셔서 인과관계 또 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인과성 입증도 어렵고 어가하락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어업인 단체가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도 현재 위원회에 손실보상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차관님,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돼 왔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인과관계를 보상에…… 과거에 우리가 보상할 때 인과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졌지요. 따지고 손실액을 따지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 문제에 들어가면 사실상……

예를 들어 수산업 같은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호 같은 경우에도 맨손어업의 인과관계나 손실액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된 사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인과관계와 손실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먹는 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과관계와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손실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못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정부의 강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하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실제로 현장 가두리양식 하는 양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는 통상적인 대규모 포획을 통해서 출하하는 이런 게 아니고.

강 포구 같은 데 가면 매운탕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 잡아 가지고서 몇몇 집에 나눠 주면서 꾸준히 주는 영업 형태라고 그런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라든지, 손실액 산정 부분들도 저는 정부에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서 그러면 과거 사례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줄 때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반영해서……

제가 폐업보상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과거 20대·21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이런 폐업보상에 준해서 다른, 그러니까 영업손실이나 폐업보상에 3년간 평균 손실보상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체 옛날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산정해 내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 보상금의 범위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요소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보류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보류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조승환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20)

(10시48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정부가 제출하고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및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자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 그리고 어획실적과 전채실적 보고, 전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수산물 양륙장소 지정 고시 및 연근해어업자의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 양륙 금지, 어업감독 공무원의 양륙검색, 양륙실적 보고, 어획확인서 발급 및 전달, 어획증명서 발급, 외국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출 그리고 연근해어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2024년 8월 26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윤준병 의원안은 2026년 2월 20일 소위에 직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에는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어선에 대한 어획·양륙실적 보고 유예, 자발적 보고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국어민총연맹은 법 제정 이후 과정에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고 어업 은퇴자에 대한 명예 TAC 요원제도 운영을 희망한다는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획·양륙실적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검증방법 그리고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이 법의 취지가 TAC를 통해 우리 수산과 관련돼 있는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며 어획보고나 양륙보고와 관련하여 어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어업인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수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제정안 입법 시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조항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은 복잡한 투입요소 규제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하락하고 현장은 불편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투입규제의 폐지 및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

며 국제사회에서는 IUU, 즉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등 강화된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외국 불법어획물 수입 금지를 통한 국내 시장 보호 및 우리 수산물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수출 증대가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평가 고도화를 위해 어선별·해역별 어획량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어획, 전재, 양륙, 유통 등 어획물이 이동하는 전 단계를 아우르는 불법어업 등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제정안 입법 시 어업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제정안에 따라 단계별로 신설되는 규제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모두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행법과 제정안을 규제별로 비교한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제정안 의결을 전제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정안 제24조제1호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어선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 위반자 중에서 제정안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해 제정안에서는 벌칙을, 어선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형벌 등의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다른 법률의 개정은 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별 개정법률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98페이지에는 정부안과 윤준병 의원안의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한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별 내용은 조문별 검토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법률안 내용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윤준병 의원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고, 목적에 있어서 차이점은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 또는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어업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목적과 관련해서는 두 제정안의 취지를 모

두 고려하여 자구를 정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제정안은 연근해어업, 어업활동 등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이나 책무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비규제어업 정의와 관련해서 이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률 해석과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를 상징적·선언적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당구장 표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정의 관련 가목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어선법 제2조제1호가목의 어선’으로 수정하고 나목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 정의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이를 해당 조항에서 약칭하고 있지만 이들은 제정안의 주요 규제대상일 뿐만 아니라 제정안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해서 정부안과 윤준병 의원안이 용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정안은 연근해어업뿐만 아니라 연근해어업 관련 행위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정부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고 시도계획과의 관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윤준병 의원안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시 중앙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수산업법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수산업법 개정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고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체계 및 자구 정비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수립 절차를 간결히 표현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 시행계획과 시도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준병 의원안의 ‘시도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도계획의 수립·변경·통보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윤준병 의원안 제6조제5항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연근해어선의 위치발신장치 작동을 의무화하여 어선의 위치와 조업활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현재 어선법상 수산물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2t 이상의 어선에 적용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선박 무게와 관계없이 연근해어선과 어획물운반업 전체로 대상을 다소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형벌의 균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한 미작동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TAC 전면 도입을 위한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안에 따른 행정형벌을 유지하되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행 또는 조업’을 ‘항행 또는 어업활동’으로 수정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준을 어선법 규정 체계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정부안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을 삭제하고,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를 정의 조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정부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어획실적 및 전제실적의 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는 어획·전제 보고를 의무화하여 연근해어선의 불법어업 예방 및 어획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TAC 관리 등 수산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어획실적 보고 의무에 관해 제정안에 따르면 조업일마다 조업시간, 어종별 어획량 등을 포함한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되며 전제실적 보고 의무는 전제 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해 양륙보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조업일마다 어획보고를 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조업일마다 어획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허위보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는 어업의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해구별로 어획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양륙장소의 지정, 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 양륙검색, 양륙실적의 보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관리 및 정확한 어획량 관리를 위해 양륙장소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양륙장소 지정을 임의적 조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 제11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를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지정 양륙항이 없는 낙도·벽지의 어선이나 기상 악화, 어선 안전상의 이유 등을 예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안 제12조는 양륙검색 및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양륙검색 시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시 또는 명령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정부안은 ‘지시’로, 윤준병 의원안은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2조제3항의 용어 또는 벌칙 규정을 제12조제4항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2조제3항의 사항도 양륙검색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지시’를 ‘명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 위반 사항도 행정형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양륙검색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조항 위반 시 처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행 절차나 세부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3조는 양륙실적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TAC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획물을 수협 위판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정확한 수치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로 양륙실적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양륙실적을 위판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양륙실적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어획확인서의 발급, 어획확인서의 전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등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안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안에 따라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어획증명서의 발급, 외국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제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는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및 수산물 수출 시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단계적인 순서를 고려하여 어획확인서가 발급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획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를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7조는 외국 수산물 수입 시 해외 불법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국내 수산물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7조와 관련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양국 간 협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과 달리 윤준병 의원안은 유사 입법례와 같이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윤준병 의원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홍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의견 아래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공청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윤준병 의원안과 같이 과거 수산업 관련 분야 종사자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보다는 전문성 등을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5장 보칙에 출입·검사 등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6장에서 벌칙, 양벌규정 그리고 과태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은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의 매매 등을 통한 수산물 유통 교란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행정형벌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제정안과 어선법에서 다른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의 균형성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안에 따른 행정형벌을 유지하고 제정안 본문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에서 예외 규정 및 조치 사항을 마련하며 고장·분실된 경우의 위치통지 의무 위반 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벌칙과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의 사항에 대해 양륙검색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명령’으로 수정할 경우 안 제12조제3항 위반 사항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정부안 및 윤준병 의원안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 총톤수 2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안 제9조 및 안 제13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t 미만 어선 대부분은 1인 조업으로 1인 조업 어선의 조업과 동시에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볼 때 윤준병 의원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법은 어업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변동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서 향후 규제와 과감한 철폐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이 법의 전제가 과거 수산업법상의, 수산 관련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TAC 체제하에서 제대로 관리하자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이미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법을 입법해 가는 과정 속에서

수산업법상의 각종 규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도대체 뭐 이리 복잡하나……

농사짓는 것하고 수산업하고 비교해 보면 농업에 비해서 지원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규제는 엄청 심해요. 심해서 수산업, 어업 하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좀 더 정확하게……

○주철현 위원 뒤에 있는 법도 마찬가지로인데, 필수농자재 지원까지 해 주고 수없이 많이 농업 지원해 주면서 규제는 거의 없는데 수산업은 제대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할 일도 안 하면서 도대체 왜 이리 규제가 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업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 제목이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이니까 어업만 하는 것 같은데 수산업도 똑같이 하게 되면, 양식업도 많이 있잖아요. 가두리라든지 패류라든지 이런 양식업도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경우는 놔 댄 버리는 건지 똑같이…… 물론 가두리양식 같은데 구역을 지어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패류 양식 같은데 광범위한 바다에서 굴이라든지 바지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업하고 뭘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서 어떤 상대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규제가 엄청 강화되고 까다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해수부 입장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소연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두 가지만 말씀 올리면요. 사실은 어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수면에서 어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한 실정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배 척별로 몇 톤 이하로 해라, 어구는 얼마 이하만 써라 그런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도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번 법을 통해서 어디에서 얼마를 잡는지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그 후에 저희들이 총량을 가지고 통제만 할 테니 나머지 규제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철폐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아까 조승환 위원님 말씀 주셨습시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양식산업발전법과 같은 다른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 농해수위원들부터 설득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이야기 하셔서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뭘 말인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운데 어업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기 전까지 저희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우선 소위 위원들부터 설득을 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르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법이고 광범위한 법인데, 어업 전체를 총괄하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법인 것 같은데 저도 개념이 잘 안 잡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물론 지난번 공청회를 하긴 했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갈 필요가 있는 법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저희들 상임위에 이 법 제출한 지가 제법 됐고요. 그동안 공청회도 하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주셨으니깐.

하여간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니 이것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주철현 위원님, 좀 봐주시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서천호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주철현 위원님도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마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어업 현장에서 조금은 불만 섞인 여론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부부처에서 충분히 사전 설명이 되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전달돼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182페이지 24조(벌칙) 조항을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로 돼 있는데, 특히 수정안 24조 1호에 보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사실 고의성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은 벌칙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저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어느 기준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벌칙 조항 자체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1호에 보면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벌칙 조항을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호, 2호, 3호, 4호, 5호를 보면 1호와 2호, 3호, 4호, 5호는 성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업의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은 2·3·4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는 어찌 보면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조금 가미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벌칙 조항에 같은 양형으로 묶어도 되는지 하는 부분은 합리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1호에서 말씀하신 것은 고장나거나 분실됐다고 해서 바로 형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안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자는 취지라서 최종적으로 단순히 고장났거나 분실했다고만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올리구요.

위치발신장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잡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후에 모든 어업관리가 되고 어획량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뀌는 제도의 제일 핵심이 위치발신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 제가 농해수위 하면서 보면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과 어촌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소득도 보면 주로 농촌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하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의 어업활동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어촌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고 나서 이걸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가와 어가의 소득 수준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뜰이나 어업활동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고.

또 서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유보했다가 다음에 계속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 자체가 지금 수산업 규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법안이다 보니까 이 법안만 봐서는 굉장히 무거운 규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업법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훨씬 더 가벼운 규제고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규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지금 해수부차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국제적으로 IUU 어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연안어업까지, 물론 주권의 문제지만 연안어업까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MMPA나 이런 것처럼 수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그 속도를 봤을 때는 사실 절대 빨리 진행돼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고.

아까 AIS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국제 규제를, 원산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현재도 2t 이상의 연근해어선은 위치신고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 확대를 조금 더 하는 것이지……

○조승환 위원 아니, 벌칙 조항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현재도 벌칙 조항이 있는 건데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아니, 양형이 더 높은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원양산업법하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양형 부분은 저도 자세히 안 봐서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도 재판단으로는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가져온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조금 손보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우리 상임위는 넘겨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민들한테도 지금 100회 이상 다 설명회를……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저희들 여러 차례 지역 다니면서 어업인들께 의견도 듣고 설

명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숙성하는 과정들을 거쳐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 보면 규제를 대단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규제 철폐를……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저희 지역의 다대어촌계가 국가어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촌계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명은 했다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청취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법안은 물론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현장에 있는 어촌계, 어촌계가 지금 가장 낮은 단위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바닷가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저도 듣겠습니다. 들어 보고 이 법을 통과시켜도 좋을지를 한 번 더 숙성을 시켜서 앞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지금 이 법률안은 4월에 한 번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11시22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조경태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두 번째 권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조경태 의원안 관련해서,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입항 신고 없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진입한 선박에 대해 출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 승선 검색 후 입항 신고 없이 항만으로 이동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미신고 선박은 현행법상 입항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어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추후 출항 시 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절차 없이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후의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려는 데 입법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통상적인 입법례는 신고 후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리청이 안보상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입항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 국방부, 관세청은 협조 규정 추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선교 의원안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즉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관리청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무역항’을 일괄적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는데 예선업의 업무 범위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되 일부 규정은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1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1시25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자료 2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적 규정은 법률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낚시인의 편의 증진이 이 법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수정의견입니다.

낚시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보다 국민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한편 낚시가 여가활동의 일부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소위원님들은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의견, 그리고 실태조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절차의 투명성·합리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최근 물환경보전법 및 하천법이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과 지난 소위 의견을 반영할 경우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 재검토 및 실태조사에 대해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은 실태조사의 한 내용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태조사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그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하며,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할 때 하천이나 농업시설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는 총 허가의 유효기간이 15년에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현행 규정은 적절한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한 취지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리고 하천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 법에서는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최대 30년 범위로 허가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장신청 횟수 제한 없이 낚시터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서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한 것은 허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낚시터업 지속가능성을 예상하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구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연장신청 횟수가 2회로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도 신법에 따라 30년 범위에 대해서는 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례를 신설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은 적용례를 신설하는 거고 개정안 본문 내용에 대한 수정 내용 의견은 아닙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관련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

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법 시행령 제17조가 낚시어선업자가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법률상 영업구역 내 영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문대림 의원안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할 수역이 아니어도 연접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낚시인을 하선시키는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갈등 요소가 존재하고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허용되어 온 기존의 영업구역을 폐지하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을 둔 시도의 관할 수역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이 현재까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 제38조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 제2항 및 기존의 제1항 영업구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하실 경우에는 개정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자구 수정과 낚시어선업자의 영업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가 어종별 어획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낚시 어획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향후 TAC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낚시인 및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TAC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낚시어선 승객 수로 수정하여 어획량 통계 분석의 적절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낚시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인식하고 낚시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여가지구(낚시여가특별구역)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시면 개정안과 관련해서 낚시인 입장의 접근도 필요하고 여가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및 수산자원 보호의 경우에 대해 해수부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의원안 제55조제1항제23호는 인용조문 오류사항 수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이나 기존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낚시 수요의 확대는 어업인과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낚시여가지구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지원은 특별구역 신청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수협중앙회는 수산자원 고갈, 환경오염 및 어업인 생계 위협이 우려되어 낚시여가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할 필요가 있고,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무역항은 대부분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명칭을 박수현 의원안으로 통일하고 관계부처 의견 제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무역항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런대로 동의가 가능한데 존경하는 문대림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이 발의하신 인접 시도 관할 제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기왕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농해수위에서 바꿔 버리면 많은 인접, 특히 전남·제주 간 인접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남의 수산인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이 부분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TAC 관련 제도가 정비가 되면 전남의 낚시어선들이 제주도까지 갈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상 낚시어선 타시는 분들이 레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지고 본전 빼고 어찌고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먼 바다까지 목숨 걸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레저의 목적으로 가게 되면 전남 낚시어선들이 제주도 연안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낚시어선도 TAC 규제가 적용되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문대림 위원.

○문대림 위원 단순한 레저 목적을 넘어서고 사실 낚시인들조차 경제활동으로 봐야 될 정도의 규모고 제주도…… 추자도를 특정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추자도,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내용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철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레저 목적의 낚시가 아니고 사실 상행위 목적의 낚시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해수부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의 어떤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두 분 위원님, 제가 조금 고민이 되고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물론 안전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또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한편으로 제주도 도민 입장에서 저쪽에서 와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하는 인식도 있으신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해관계가 워낙 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 지역 낚시어선업자와 또 실제 낚시하시는 분들 간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논의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조금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방과 의논 좀 해 봤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어쨌든 상생 방안은 논의를 해 봐야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작은 단위에서 한번……

○문대림 위원 이게 실은 물리적 충돌도 있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인데 해수부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의결정족수는 충족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의사일정 제14항하고 16항은 통합해서 대안으로 조정하고 의사일정 15항, 17항은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윤준병 위원, 조경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조경태 야당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윤준병 위원 아니, 계시잖아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7항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11시3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은 물양장을 소형선부두로 변경하고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그다음에 어항편익시설에 귀어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종사자의 주거 및 교육시설과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또는 쇼핑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물양장을 소형선부두로 변경하는 것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기능시설과 어항편익시설에 일부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설 수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하는 것은 관광객 이용시설을 다양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레저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 어업인 또는 지역상인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기존 어항 내 상행위나 어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반영하실 경우에는 띄어쓰기 부분에서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종사자’의 가운데를 띄어쓰기하는 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맞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항배후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어항배후지역의 지정 근거 및 어항배후지역에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항배후지역 지정은 어항 및 배후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촌과 연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에 관련해서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는 기존 항만구역·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나 어항배후지역의 경우 어항배후지역의 지정 위치와 기존 어항구역과의 관계, 어항배후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어항배후지역을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하겠다는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지정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조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고 관광진흥법 관련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어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의제 조항을 추가 및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는 기존 의제 대상 규정인 제56조 및 제88조의 인허가의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제30조 및 제86조도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인허가 의제를 보다 실체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인허가 의제를 할 필요가 있고, 제36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해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이러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어항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어항개발기본계획과 비지정권자 사업 시행 시 수립하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어항 개발 절차에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도입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어항개발기본계획은 기존의 어항개발계획과 명칭 및 수립주기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사실상 동일하며, 어촌·어항법에서는 이미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획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계획으로의 명칭 변경은 혼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정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이 현행 유지안입니다.

실시계획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지정권자의 경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비지정권자의 사업계획 시행허가 삭제 관련, 개정안은 비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행 사업계획 시행허가를 삭제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은 측량, 지반조사, 설계,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는 세부적인 단계로 비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 허가는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등 고시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비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수립·변경 시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 따라 사업시행 허가는 고시하고 실시계획 승인은 공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항시설을 매각·양여함에 있어 국유지를 공공단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이 지정해제되어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된 경우도 추가하며, 어항관리청의 범위에 구청장을 추가하고 어항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금 부과에 법적 근거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점용·사용료 및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전문위원님, 12시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문제 없는지…… 빠르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여러분, 이양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일단 정부안 먼저 들어 보시지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시키지요.

○윤준병 위원 뒤에 더 해야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소위원장 조경태 중요한 사항만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완 보셔야 될 부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명확화, 출입통제 조치, 벌칙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지행위에 기자재 창고 등의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활용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어항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안 제45조제9호 및 제10호에서 기본 요건인 어항관리청의 허가는 현행법 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통제 조치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수정의견은 309페이지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11시4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32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업권 담보 금지 규정의 어업권 소유 주체에 업종별수협을 추가하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법률상 금지되는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여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등과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정치망어업 면허대상으로 업종별수협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행법 8조에 업종별수협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 제19조 3항과 62조 등에도 업종별수협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9)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11시50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34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그리고 무허가조업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정선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도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법조치 거부·방해과정에서 직무집행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벌칙을 신설하며 담보금 산정 기준을 벌금액 원칙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외국의 입법례나 유엔의 경우를 봤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벌금형은 각국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징역형의 신설은 이러한 협약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의 신설 관련해서는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벌칙 수준이 동일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죄와의 관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행위의 벌금형을 개정안보다 더 상향해서 10억 원에서 15억 원 그리고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더 상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집행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방해 때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은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하여서 개정안보다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 신설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외교부는 징역형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해양경찰청은 형법과 관련성이 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추징·담보금의 수산발전기금 납입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외국인으로부터 추징·수령한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려는 것으로, 해당 불법어업 외국어선에 대한 사법절차를 보면 절차와 관련해서 담보금이 납부되면 즉시 선박과 선원을 반환·석방하며 미납 시에는 관계자를 구속·기소하고 선원들은 강제출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금이 현재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해서 어업인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만 담보금의 성격이 보석금·벌금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이를 직접적으로 피해자나 관련 어업인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관련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수입은 일반회계에 귀속되는데 특정 수입을 특정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도

록 할 수 있는지 재정적·회계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획예산처는 벌금에 대한 것은 다른 벌금처럼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어업활동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하고 사업 수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불법어업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종의 벌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관계부처의 의견도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관계부처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 하나는 계속심사 하시고 하나는 처리해 주시고.

○소위원장 조경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는 심사하고 하나는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20항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22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완 37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앞의 논의하신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심사……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계속심사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11시57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23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를 보면 다른 내용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법안 자체에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과 병합심사 여부 그다음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통과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 정합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수수산물기자재 부분도 농업 부분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검토하시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 중인데 이때도 농산물만 하고 수산물은 빼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왜?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해수부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고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바로 됐어요.

이 필수수산자재 지원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이지 법 만들고 시행일 늦추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행하십시오. 왜 수산인들만 차별대우 받아야 돼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지금 다른 법안하고 또 농업 쪽 통과된 법안 참고해서 신속하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어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법 통과했는데 농어촌 기본소득법에서 농촌·

어촌 읍면지역, 농어촌만 포함되고 동 지역은 제외됐는데 해수부도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일단 정부……

○주철현 위원 동 지역 어촌은 제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농림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의견을 사전 조율하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현장의 상황과 또 기본소득의 취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주철현 위원 기본소득의 취지가 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농식품부가 하자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하신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동 지역 어촌을 제외한 합리적 근거가 뭐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어떻게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차관님 동 지역이라도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소멸지역이 있고요 또 읍면 지역도 10만 넘어가는 읍면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장관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있으니까 그때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차관님,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하십시오, 따라가지 마시고.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제가 농림부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오늘 통과시키지 못한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는 서삼석 의원·장동혁 의원·윤준병 의원께서 한 법안하고 또 정부와 윤준병 의원께서 했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이 두 가지는 4월 초중순에 한번 더 열 거거든요. 그때 소위 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문대림 서천호 윤준병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해양경찰청

차장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